옥 천 군

선람	기관의 장

군 보

http://www.oc.go.kr

제1294호 2023. 1. 30.(월)

【기 타】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2호 옥천군 공모사업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3호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2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4호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7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5호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7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6호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35

회람									

발행: 옥천군 편집: 기획감사실(☎730-3063)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 - 2호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박한범 의원

3. 제안이유

옥천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안 제5조)

라.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 실적 평가(안 제6조~제7조)

마.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바. 표창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 근거법령

가.「지방자치법」제13조, 제28조, 제51조

나.「지방재정법」제22조

다.「지방재정법 시행령」제33조

라.「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충청북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⑤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신청과 선정 이후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 군수는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사전에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

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

②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과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등)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군 소속 공무원, 부서 및 민간에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3호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경숙 의원)

2. **발의의원** : 김경숙 의원, 박정옥 의원

3. **제안이유**

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순화보직 및 균형인사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의회사무과장 직위의 직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의회사무과장’ 직렬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3조)

-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삭제)

5. 근거법령

가.「지방자치법」 제10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무과장) ① (생 략) 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생 략)	제3조(사무과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 - 4호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박정옥 의원

3. **제안이유**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기준을 조정하여 결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조정(안 제2조)

나. 의장의 선임위원 소속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 규정 삭제(안 3조제2항)

다. 선임위원에게 위촉과 관련하여 본인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추가(안 제3조5항)

라.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삭제(안 제7조)

5. 근거법령

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나.「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5인”을 “10인”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종전 별지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조제5항 관련)

승 낙 서

본인은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결산검사위원 위촉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주소)
성 명 (인)

옥천군의회의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옥천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면개정 95.4.10, 06.12.29.,17.11.30.>	제2조(위원의 정수) ---------- ---------- --------- 10인 ---------- ---------- ---------- ---------- ----------. ----- ---------- ---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① (생략) ② 군의회 의장이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④ (생 략) ⑤ 군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 세출의 결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

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 - 5호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발의의원** : 조규룡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사 운영비의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군수 관사 폐지로 군수관사(1급 관사)에 대한 사항 삭제
(안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6조)

나. 관사 규모 제한 규정 신설(안 제51조)

다. 관사 사용자의 관사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6조)

5. 근거법령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조의 2, 제5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군수·부군수”를 “부군수”로 한다.

제5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2조 단서 중 “1급·2급”을 “2급”으로 한다.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2관사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한다.

제52조 단서 중 “1급·2급”을 “2급”으로 한다.

제56조제2호 중 “관리비(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를 “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을 “기본적인 비품”으로, “경비(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정의) ---------- ----- 부군수 ---------- ---------- ----------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군수 관사 2.·3. (생 략) <신 설>	제51조(관사의 구분) ① ---------- ----------. <삭 제> 2.·3. (현행과 같음) ② 2급 관사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한다.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허가) ---------- ---------- ----------. ---- 2급 ----------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생 략)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과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관리비

현 행	개 정 안
2급 관사로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삭 제>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4. 기본적인 비품---------- ---------- -- 경비
5. 전기요금(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삭 제>
6. 전화요금(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삭 제>
7. 수도요금(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삭 제>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삭 제>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

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 - 6호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발의의원** : 이병우 의원, 송윤섭 의원

3. **제안이유**

기존의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 지원

4. 주요골자

가. 군수의 책무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나.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성장지원(안 제6조)

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6조～제19조)

라. 사회경제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안 제20조)

5. 근거법령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

나.「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

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9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조직 등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기업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충청북도지사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다.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4.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 간에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현황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 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를 조성·발전시키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제5조(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주요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과 군 지원 시책과 효율적·유기적 연계·협력 방안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협력 증진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성장지원) ① 군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의 자발적 의지가 있을 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하고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사업개발비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주기에 맞는 경영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무원과 옥천군민에 대한 교육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홍보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 및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1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연계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과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조세감면)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군수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무를 민간 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개인·단체·기업에 대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장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군수
2. 군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간지원조직 책임자

2.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자 및 실무자

3. 사회적경제 관련 대학교수, 시민단체 종사자 및 전문가

4. 그 밖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옥천군 위원회 실

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민관협력 기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지역 현황조사 및 지원 사업 모니터링
4.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관계망 형성 지원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③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단체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옥천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발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국가등의 협력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는 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조합등의 국가등의 시설 및 물품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소비자의 후생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조합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